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98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최유희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박영한, 신복자,
유정희,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황철규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별표 4의 2, 3호는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부여하였으나, 조례 제31조 단서는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규정함.
- 별표 4의 해당 규정은 권한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유표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을 자치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안 별표 4의 2, 3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호 및 제3호 중 "자치구청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4의 2, 3호는 자유표시 구역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부여한 규정은 권한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별표 4의 2, 3호의 자구를 수정(자치구청장 → 시장)하여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